

장:(200)사회개발비 관:(220)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:(2210)보건·환경

세항:(2211)보건위생관리

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2000 사회개발비		271,752,664	236,399,656	35,353,008	[국 188,324,752 도 43,005,934 지 0 [기 14,688,666 분 5,165,312 교 0 균 20,568,000]
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		271,752,664	236,399,656	35,353,008	[국 188,324,752 도 43,005,934 지 0 [기 14,688,666 분 5,165,312 교 0 균 20,568,000]
2210 보건·환경		271,752,664	236,399,656	35,353,008	[국 188,324,752 도 43,005,934 지 0 [기 14,688,666 분 5,165,312 교 0 균 20,568,000]
2211 보건위생관리		49,082,501	31,075,021	18,007,480	[국 14,845,737 도 14,401,692 지 0 [기 14,669,760 분 5,165,312 교 0 균 0]
100 경상예산		206,438	194,438	12,000	
120 경상적경비		206,438	194,438	12,000	
	201 일반운영비	57,778	57,278	500	
		57,778	57,278	500	01 일반운영비 ○ 일반수용비 = 22,500 ○ 공공요금및제세 = 1,048 ○ 운영수당 = 13,230 ○ 급량비 = 20,500 ○ 시설장비유지비 = 500
	202 여비	143,320	131,820	11,500	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200)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:(2210)보건·환경

세항:(2211)보건위생관리

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85,000	73,500	11,500	01 국내여비 ○보건위생 업무추진 = 85,000
		58,320	58,320	0	02 월액여비 ○병원선 여비 = 58,320
	203 업무추진비	2,400	2,400	0	
		2,400	2,400	0	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○보건위생업무추진 = 2,400
	301 일반보상금	2,940	2,940	0	
		2,940	2,940	0	12 기타보상금 ○세균성이질등 전염병 역학조사 전문위원 활동 보상 = 2,940
200	사업예산	48,876,063	30,880,583	17,995,480	[국 14,845,737 도 14,195,254 지 0 균 0] [기 14,669,760 분 5,165,312 교 0 ]
210	보조사업	38,466,441	25,170,088	13,296,353	[국 14,845,737 도 8,950,944 지 0 균 0] [기 14,669,760 분 0 교 0 ]
	101 인건비	34,156	19,500	14,656	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34,156	19,500	14,656	10 일시사업인부임 ○ 예방접종 등록관리 인부임 = 19,500 (도) 9,750 (기) 9,750 ○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= 14,656 (도) 7,328 (기) 7,328
	201 일반운영비	190,189	262,895	△72,706	
		190,189	262,895	△72,706	01 일반운영비 ○ 공중보건조사(역학조사관) 지속교육 = 4,417 (국) 4,417 ○ 전염병관리자과정 교육훈련 = 2,050 (국) 2,050 ○ 전염병관리 전담요원 위탁교육 = 41,000 (국) 20,500 (도) 20,500 ○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 = 14,030 (국) 14,030 ○ 금연클리닉 운영평가 = 8,766 (도) 4,383 (기) 4,383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건강생활 실천사업(교육) 1,500,000원 x 34명 = 51,000 (기) 51,000 ○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(도) = 20,000 (도) 10,000 (기) 10,000 ○방문보건사업 담당자 교육 = 3,116 (도) 1,558 (기) 1,558 ○불임부부심의운영수당 = 700 (국) 420 (도) 280 ○고혈압 당뇨 담당자 교육 = 45,110 (도) 22,555 (기) 22,555
	202 여비	2,300	4,700	△2,400	
		2,300	4,700	△2,400	01 국내여비 ○전염병 역학조사 활동 여비 = 500 (국) 500 ○전염병관리 교육여비 300,000원 x 2명 = 600 (국) 200 (도) 400 ○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업무수행 = 1,200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600
					(기) 600
	301 일반보상금	114,480	89,010	25,470	
		103,680	78,798	24,882	01 사회보장적수혜금
					○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
					= 25,680
					(국) 12,840
					(도) 12,840
					○에이즈환자 진료비
					= 74,000
					(도) 37,000
					(기) 37,000
					○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
					= 4,000
					(국) 2,000
					(도) 2,000
		10,800	10,212	588	12 기타보상금
					○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비
					= 10,800
					(기) 10,800
	306 출연금	3,446,000	2,293,000	1,153,000	○지방의료원 기능보강
					= 2,000,000
					(기) 2,000,000
					○치매병원 건립(서산)
					= 1,446,000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723,000 (도) 723,000
	307 민간이전	1,360,025	344,505	1,015,520	
		85,000	0	85,000	01 의료및구료비 ○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= 85,000 (기) 85,000
		1,235,025	319,505	915,520	02 민간경상보조 ○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= 288,220 (국) 144,110 (도) 144,110 ○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 = 9,240 (도) 4,620 (기) 4,620 ○건강생활실천사업 = 100,000 (도) 50,000 (기) 50,000 ○고혈압·당뇨 관리사업 = 80,000 (도) 40,000 (기) 40,000 ○만성병 감시사업 = 4,865 (기) 4,865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표본감시 병원 정보관리비 = 3,200 (기) 3,200 ○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= 539,500 (국) 539,500 ○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= 210,000 (국) 210,000
		40,000	25,000	15,000	05 민간위탁금 ○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= 40,000 (국) 20,000 (도) 20,000
	308 자치단체등 이전	17,681,983	11,486,211	6,195,772	
		17,572,183	11,336,211	6,235,972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 임산부·영유아 건강진단 19,480,000원 x 70% = 13,636 (도) 5,844 (기) 7,792 ○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420,264,000원 x 70% = 294,185 (도) 126,079 (기) 168,106 ○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50,064,000원 x 70% = 245,045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(도)	105,019
					(기)	140,026
					○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	510,128,000원 x 75% = 382,596
					(도)	127,532
					(기)	255,064
					○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	1,655,000원 x 66명 = 109,230
					(국)	54,615
					(도)	54,615
					○ 예방접종(장티푸스외 5종)	= 824,149
					(도)	347,002
					(기)	477,147
					○ B형수직감염 예방사업	51,240,000원 x 75% = 38,430
					(도)	12,810
					(기)	25,620
					○ 병원 무료예방접종(9종)	
					3,480,514,000원 x 75%	= 2,610,386
					(도)	870,129
					(기)	1,740,257
					○ 영유아 예방접종	712,608,000원 x 75% = 534,456
					(도)	178,152
					(기)	356,304
					○ 주요전염병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	
					20,000,000원 x 75%	= 15,000
					(국)	10,000

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5,000
					○암조기검진사업 2,219,874,000원 x 70% = 1,553,912
					(도) 443,975
					(기) 1,109,937
					○암예방관리 211,560,000원 x 50% = 105,780
					(기) 105,780
					○금연클리닉운영 1,915,870,000원 x 75% = 1,436,903
					(도) 478,968
					(기) 957,935
					○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146,500,000원 x 75% = 109,875
					(도) 36,625
					(기) 73,250
					○건강생활실천사업(시·군) = 975,000
					(도) 30,000
					(기) 945,000
					○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1,110,000,000원 x 75% = 832,500
					(도) 277,500
					(기) 555,000
					○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82,400,000원 x 50% = 41,200
					(기) 41,200
					○고혈압·당뇨관리 홍보사업 91,050,000원 x 50% = 45,525
					(기) 45,525
					○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 12,741,000원 x 75% = 9,556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6,371
					(도) 3,185
					○성병검진 및 치료비 1,200,000원 x 75% = 900
					(도) 300
					(기) 600
					○성병진단 시약 구입 8,130,000원 x 75% = 6,098
					(도) 2,033
					(기) 4,065
					○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16,830,000원 x 75% = 12,623
					(도) 4,208
					(기) 8,415
					○전염병관리자과정 교육여비(시군) = 300
					(국) 300
					○전염병관리요원 교육여비(시군)
					200,000원 x 39명 x 50% = 3,900
					(국) 3,900
					○희귀·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
					2,813,016,600원 x 60% = 1,687,810
					(도) 281,302
					(기) 1,406,508
					○아동·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5,960,000원 x 75% = 41,970
					(도) 13,990
					(기) 27,980
					○노인의치 보철사업 849,900,000원 x 60% = 509,94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84,990
					(기) 424,950
					○치아흠메우기 사업 371,250,000원 x 60% = 222,750
					(도) 37,125
					(기) 185,625
					○수돗물 불소화 약품 구입비 27,000,000원 x 30% = 8,100
					(기) 8,100
					○알콜상담센터 운영 = 150,375
					(도) 50,125
					(기) 100,250
					○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사업 = 3,000
					(기) 3,000
					○한방지역보건사업(16개소) 80,000,000원 x 50% = 40,000
					(기) 40,000
					○암치료비지원 1,570,348,000원 x 70% = 1,099,244
					(도) 314,070
					(기) 785,174
					○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(시군) 312,000,000원 x 50% = 156,000
					(기) 156,000
					○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운영 176,000,000원 x 75% = 132,000
					(도) 44,000
					(기) 88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방문보건사업 1,975,690,000원 x 50% = 987,845 (기) 987,845
					○임산부·영유아 영양보충사업 = 420,000 (기) 420,000
					○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업무수행 1,282,000원 x 75% = 962 (도) 321 (기) 641
					○불임부부지원 1,204,097,000원 x 70% = 842,868 (국) 602,129 (도) 240,739
					○산모·신생아 도우미 지원 811,015,500원 x 90% = 729,914 (국) 648,813 (도) 81,101
					○노인건강증진 HUB보건소 운영 85,126,000원 x 50% = 42,563 (기) 42,563
					○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(시군) 159,358,000원 x 75% = 119,519 (도) 39,840 (기) 79,679
					○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28,260,000원 x 1개소 = 28,260 (국) 14,130 (도) 14,13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= 14,000 (도) 6,000 (기) 8,000 ○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= 127,878 (도) 54,805 (기) 73,073 ○구강보건실 운영(특수학교) = 6,000 (기) 6,000
		109,800	150,000	△40,200	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○금연교육(교육청 흡연교육) 219,600,000원 x 50% = 109,800 (기) 109,800
	402 민간자본이 전	74,900	0	74,900	
		74,900	0	74,900	01 민간자본보조 ○농어촌 응급의료기관시설 장비보강 지원 = 74,900 (국) 74,9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15,562,408	10,670,267	4,892,141	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15,562,408	10,670,267	4,892,141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,000,000,000원 x 5/6 = 7,500,000 (국) 6,000,000 (도) 1,500,000 ○정신질환시설기능보강사업 7,874,024,000원 x 75% = 5,905,518 (국) 3,937,012 (도) 1,968,506 ○구강보건실 설치 262,500,000원 x 50% = 131,250 (기) 131,250 ○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338,460,000원 x 2/3 = 225,640 (기) 225,640 ○치매병원 건립 3,152,000,000원 x 50% = 1,576,000 (국) 1,576,000 ○치매병원 장비구입 448,000,000원 x 50% = 224,000 (국) 224,000
220					[국 0 도 5,244,310 지 0 균 0] [기 0 분 5,165,312 교 0 ]
자체사업		10,409,622	5,710,495	4,699,127	
	201 일반운영비	350,460	450,265	△99,805	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350,460	450,265	△99,805	01 일반운영비
					○공중보건 의사 직무교육비
					= 28,990
					(도) 20,293
					(분) 8,697
					○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교육비
					= 4,997
					(도) 3,498
					(분) 1,499
					○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
					= 7,760
					(도) 5,600
					(분) 2,160
					○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
					= 8,713
					(도) 6,099
					(분) 2,614
					○병원선 관리
					= 300,000
	206 재료비	257,900	241,150	16,750	○전염병발생지 및 취약지 일제소독용 방역약품 구입
					= 160,000
					○병원선 낙도주민 진료(의약품비 등)
					= 95,400
					○부정불량식품 및 농산물 검체물 구입비
					= 2,500
	207 연구개발비	302,000	65,000	237,000	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302,000	0	302,000	02 전산개발비 ○원격화상의료시스템 구축 = 302,000
	306 출연금	410,000	1,210,000	△800,000	○공공보건사업 = 210,000 (도) 105,000 (분) 105,000 ○공공의료기관 인공관절 무료시술 = 100,000 ○공공의료기관 요실금 무료시술 = 100,000
	307 민간이전	169,943	152,442	17,501	
		55,943	46,000	9,943	02 민간경상보조 ○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단속 등(한빛복지협회) = 5,000 ○에이즈예방 교육·훈련(에이즈예방협회) = 20,000 ○전국한센인체육대회 참가(한빛복지협회) = 3,000 ○에이즈 예방홍보(에이즈퇴치연맹) = 20,000 ○결핵약품 보급수수료 지원 8,490,000원 x 70% = 5,943 ○결핵관리 담당자 교육 = 2,000
		114,000	106,442	7,558	05 민간위탁금 ○한센병관리 진료사업(한센복지협회) = 75,000

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한센병환자 재활사업 지원(한센복지협회) = 21,000 ○저소득 한센병환자 보청기 지원(한센복지협회) = 14,000 ○이동의료응급세트 장비관리비 = 4,000
	308 자치단체등 이전	8,307,879	3,120,480	5,187,399	
		8,307,879	3,120,480	5,187,399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 = 7,362,000 (도) 2,316,658 (분) 5,045,342 ○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(지방이양) 570,699,000원 x 30% = 171,210 ○한센병환자 진료지원 15,504,000원 x 30% = 4,652 ○한센병환자 난방비 지원 20,000,000원 x 50% = 10,000 ○결핵 신환자 발견사업(이동사업) 1,500원 x 46,000명 x 30% = 20,700 ○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 15,000원 x 1,500명 x 30% = 6,750 ○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지원(유문등 교체) 1,000,000원 x 3개소 = 3,000 ○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 지원(6개소) 9,000,000원 x 30% = 2,700 ○성인병 질환검진 30,000원 x 5,000명 x 20% = 30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1,100원 x 11,000명 x 18회 x 30% = 65,340 ○가정간호사업           200원 x 50,000명 x 4회 x 30% = 12,000 ○도서보건진료소 운영비(9개소) 21,600,000원 x 30% = 6,480 ○치매환자 관리           185,100,000원 x 30% = 55,530 ○지역정신보건사업       239,400,000원 x 30% = 71,820 ○정신질환시설입소환자 안전보험비(2,300명) 19,550,000원 x 30% = 5,865 ○정신질환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(334명) · 3년미만           100,000원 x 55명 x 12월 x 20% = 13,200 · 3~5년            150,000원 x 73명 x 12월 x 20% = 26,280 · 5년이상           180,000원 x 206명 x 12월 x 20% = 88,992 ○재가치매노인 관리사업   525,000,000원 x 30% = 157,500 ○농어촌여성 건강검진사업   300,000,000원 x 30% = 90,000 ○전립선암 검진           14,620원 x 10,000명 x 30% = 43,860 ○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200,000,000원 x 30% = 60,000
	402 민간자본이 전	195,000	77,000	118,000	
		195,000	77,000	118,000	01 민간자본보조 ○한센복지협회 장비구입(레이저치료기) = 35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결핵협회장비구입(엑스선 DR) = 70,000 ○건강관리협회(생화학 자동분석기) = 90,0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351,440	390,200	△38,760	
		351,440	390,200	△38,76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한센병환자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(2개소) 80,000,000원 x 30% = 24,000 ○한센병환자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2,700,000원 x 24동 x 30% = 19,440 ○한센병 정착촌 난방설비 76,000,000원 x 50% = 38,000 ○정산 해남진료소 신축 140,000,000원 x 50% = 70,000 ○건강증진센터 기능보강 = 200,000
	405 자산취득비	65,000	1,798	63,202	
		65,000	1,798	63,202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병원선 의료장비(초음파기) = 65,000
2212	환경관리	29,367,769	25,525,719	3,842,050	[국 16,705,500 도 11,204,269 지 0 균 1,458,000] [기 0 분 0 교 0 ]
	100 경상예산	136,200	92,690	43,510	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120 경상적경비	136,200	92,690	43,510	
	201 일반운영비	57,700	38,550	19,150	
		43,500	35,850	7,650	01 일반운영비 ○ 일반수용비 = 15,000 ○ 공공요금및제세 = 8,700 ○ 운영수당 = 7,800 ○ 급량비 = 12,000
		14,200	2,700	11,500	02 행사운영비 ○ 환경보전대상 운영 = 2,700 ○ 환경의날 행사 등 = 10,000 ○ 청소년 철새탐조생태기행 행사 추진 = 1,500
	202 여비	55,600	43,840	11,760	
		55,600	43,840	11,760	01 국내여비 ○ 환경관리업무추진 = 45,600 ○ 환경오염배출업소 점검업무 추진 = 10,000
	203 업무추진비	2,400	2,400	0	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2,400	2,400	0	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○환경관리업무추진 = 2,400
	301 일반보상금	20,500	7,900	12,600	
		1,500	5,500	△4,000	10 행사실비보상금 ○청소년 철새탐조생태기행참석자 실비보상 = 1,500
		19,000	2,400	16,600	12 기타보상금 ○환경보전대상 시상금 = 14,000 ○민간환경단체와의 배출업소 합동점검 = 3,000 ○환경오염신고(128) 포상금 = 2,000
200 사업예산		29,231,569	25,433,029	3,798,540	[국 16,705,500 도 11,068,069 지 0 균 1,458,000] [기 0 분 0 교 0 ]
210 보조사업		24,126,500	23,146,200	980,300	[국 16,705,500 도 5,963,000 지 0 균 1,458,000] [기 0 분 0 교 0 ]
	307 민간이전	45,000	30,000	15,000	
		45,000	30,000	15,000	02 민간경상보조 ○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(5개단체) = 45,000 (국) 31,500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13,500
	308 자치단체등 이전	1,612,000	765,000	847,000	
		1,612,000	765,000	847,00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생물다양성 관리계약(3개소) 1,153,332,000원 x 60% = 692,000 (국) 346,000 (도) 346,000 ○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 = 920,000 (국) 460,000 (도) 460,0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22,469,500	22,351,200	118,300	
		22,469,500	22,351,200	118,3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1,325,000,000원 x 75% = 993,750 (국) 662,500 (도) 331,250 ○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(1개소) = 750,000 (국) 750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(8개소) 9,130,000,000원 x 75% = 6,847,500 (국) 4,565,000 (도) 2,282,500
					○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(2개소) 1,350,000,000원 x 30% = 405,000 (국) 405,000
					○폐기물매립시설설치(2개소) 11,460,000,000원 x 25% = 2,865,000 (국) 1,865,000 (도) 1,000,000
					○소각시설 설치사업(3개소) = 7,477,000 (국) 7,477,000
					○대기측정망 설치사업 187,000,000원 x 75% = 140,250 (국) 93,500 (도) 46,750
					○천수만생태공원화 사업 = 882,000 (도) 441,000 (균) 441,000
					○태안생태공원화 사업 = 1,368,000 (도) 684,000 (균) 684,000
					○금강생태공원화 사업 = 666,000 (도) 333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균) 333,000
					○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166,666,000원 x 45% = 75,000
					(국) 50,000
					(도) 25,000
220	자체사업	5,105,069	2,286,829	2,818,240	
	206 재료비	2,450	2,100	350	○동절기 야생동물 먹이구입 = 2,450
	207 연구개발비	400,000	430,000	△30,000	
		400,000	430,000	△30,000	01 용역비 ○환경보전 중·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= 200,000 ○종합 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(2차) = 200,000
	307 민간이전	634,500	550,500	84,000	
		612,000	534,500	77,500	02 민간경상보조 ○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= 200,000 ○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= 60,000 ○대기오염실태조사 = 100,000 ○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운영비 = 151,000

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동북아 청소년 공동 환경조사 = 5,000 ○중국 강소성 자오퉁환경관리기업 협약에 대한 기술지도사업 = 6,000 ○푸른충남21현안사업비 = 50,000 ○금남북 정맥보호사업 = 40,000
		22,500	16,000	6,500	04 민간행사보조 ○중국 강소성과의 환경 교류회 개최 = 20,000 ○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= 2,500
	308 자치단체등 이전	678,119	704,229	△26,110	
		584,619	704,229	△119,61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50,457,600원 x 50% = 25,229 ○부상 야생동물 진료 32,000,000원 x 50% = 16,000 ○금강하구 쓰레기처리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 ○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60,000,000원 x 50% = 30,000 ○도립공원 청소인부임(12명) = 310,000 ○실버환경감시단 운영 = 103,390
		93,500	0	93,500	08 기타부담금 ○농약빈병 회수사업 부담금 = 93,500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3,390,000	600,000	2,790,000	
		3,390,000	600,000	2,79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도립공원개발(4개소) 3,000,000,000원 x 50% = 1,500,000 ○환경교육센터 건립 600,000,000원 x 50% = 300,000 ○생태지도(비오톱) 제작 100,000,000원 x 2개소 = 200,000 ○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사업(덕산) 300,000,000원 x 30% = 90,000 ○연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= 1,300,000
2213 수질관리		193,302,394	179,798,916	13,503,478	[국 156,773,515 도 17,399,973 지 0 균 19,110,000] [기 18,906 분 0 교 0 ]
	100 경상예산	83,270	70,610	12,660	
	120 경상적경비	83,270	70,610	12,660	
	201 일반운영비	39,420	34,320	5,100	
		26,920	24,820	2,100	01 일반운영비 ○일반수용비 = 11,000 ○공공요금및제세 = 6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운영수당 = 4,320
					○급량비 = 11,000
		12,500	9,500	3,000	02 행사운영비
					○수질오염 방제훈련 = 1,500
					○물의 날 행사 = 3,000
					○수질개선관련 워크샵 = 8,000
	202 여비	38,000	32,000	6,000	
		38,000	32,000	6,000	01 국내여비
					○수질관리 업무추진 = 38,000
	203 업무추진비	2,400	2,400	0	
		2,400	2,400	0	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
					○수질관리 업무추진 = 2,400
	301 일반보상금	3,450	1,890	1,560	
		3,450	1,890	1,560	10 행사실비보상금
					○수질오염방제훈련 참석자 실비보상 = 900
					○물의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= 1,500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수질개선관련 워크샵 참석자 = 1,050
200	사업예산	193,219,124	179,728,306	13,490,818	[국 156,773,515 도 17,316,703 지 0 균 19,110,000] [기 18,906 분 0 교 0 ]
210	보조사업	190,431,124	177,627,306	12,803,818	[국 156,773,515 도 14,528,703 지 0 균 19,110,000] [기 18,906 분 0 교 0 ]
	202 여비	18,906	18,230	676	
		13,906	13,230	676	01 국내여비 ○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조사 = 3,906 (기) 3,906 ○수질오염총량관리제 업무추진 = 10,000 (기) 10,000
		5,000	5,000	0	03 국외여비 ○오염총량관리제 및 기금운용 선진지 견학 = 5,000 (기) 5,0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190,412,218	177,609,076	12,803,142	
		190,412,218	177,609,076	12,803,142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= 90,283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78,709,000
					(도) 11,574,000
					○하수관거정비사업 = 25,643,000
					(국) 25,643,000
					○축산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(시범사업)
					1,468,571,000원 x 70% = 1,028,000
					(국) 1,028,000
					○자연형 하천정화사업 6,064,285,000원 x 70% = 4,245,000
					(국) 4,245,000
					○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= 26,012,000
					(국) 26,012,000
					○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
					747,030,000원 x 60% = 448,218
					(국) 373,515
					(도) 74,703
					○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 = 23,040,000
					(국) 20,160,000
					(도) 2,880,000
					○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= 19,110,000
					(균) 19,110,000
					○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= 603,000
					(국) 603,000
220					
자체사업		2,788,000	2,101,000	687,000	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01 일반운영비	45,000	32,000	13,000	
		45,000	32,000	13,000	01 일반운영비 ○수질오염총량관리 자문위원 수당 = 5,000 ○수질보전 홍보물 제작 = 20,000 ○공공하수도 운영 수당 = 10,000 ○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 = 10,000
	307 민간이전	46,000	6,000	40,000	
		40,000	0	40,000	02 민간경상보조 ○금강수계가꾸기사업 = 40,000
		6,000	6,000	0	04 민간행사보조 ○물관련 심포지움행사 지원 = 6,0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2,697,000	1,793,000	904,000	
		2,697,000	1,793,000	904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지하수 폐공관리 2,500,000원 x 100공 x 30% = 75,000 ○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2,000,000,000원 x 30% = 600,000
					○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1,000,000,000원 x 30% = 300,000
					○수질환경우수마을 육성 = 200,000
					○소규모 하수도 정비 = 177,000
					○수생식물재배 시범사업 230,000,000원 x 50% = 115,000
					○마을상수도시설 1,000,000,000원 x 50% = 500,000
					○노후상수도관갱생 및 맑은물공급 시범사업 150,000,000원 x 14시군 x 30% = 630,000
					○예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
세 출 합 계		271,752,664	236,399,656	35,353,008	